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7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필』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기간 : 2019. 6.20.(목) ~ 2019. 7. 5.(금)까지 (16일간)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3. 공고내역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업소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1	이○○	920530-1*****	더○○○ 김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2 (남가좌동)	2017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필	과태료부과 220,400원
2	김○○	700118-2*****	아○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19 (남가좌동)		과태료부과 220,400원
3	이○○	810905-1*****	키○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물길 16 (창천동)		과태료부과 220,400원
4	권○○	801211-1*****	비○○○치 신촌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4길 34 (창천동)		과태료부과 220,400원
5	백○○	971226-1*****	더○○커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00 (북가좌동)		과태료부과 220,400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업소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6	장○○	630118-2*****	빵○○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14 (홍제동)	2017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필	과태료부과 220,400원
7	이○○	740610-2*****	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2가길 6 (창천동)		과태료부과 220,400원

4. 유의사항

- 과태료를 자진납부(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3%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그 이후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증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대 75%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과된 과태료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02-330-89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